

환경분쟁조정사례

허 범 행 |

법무법인 로월드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석사, 행정법전공)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재학(행정법전공)

환경보전협회 자문변호사, 원주지방환경청 자문변호사

경기특장개발 주식회사, KNJ엔지니어링 등 다수의 환경기업 고문변호사

tel. 02-594-9600 | h9332@hanmail.net

도로소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7 선고 2007 가합 3006 판결

이 건의 소송 진행경과

원고는 서울 내부순환도로에 인접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위 내부순환도로의 설치·관리자인데, 원고는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을 고려하여 방음 시설을 설치하거나 통행을 제한하는 등 그 소음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과 방음터널 형태의 방음 시설의 설치를 구하였다.

법원은 위 도로상에 현존하는 소음이 원고에게 보호가치 있는 생활이익이 형성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가사 그 생활이익 형성 이후에 어느 정도 소음의 증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를 넘지 않는 것임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사안의 개요

가. 이 사건 도로 및 이 사건 아파트

- 피고는 1998. 12 내부순환도로를 개통하였고, 갑(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사업주체임)은 1999. 9. 8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주택사업승인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를 하여 2003. 9. 18 준공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도로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위 도로변과 이 사건 아파트 각 동 이격거리는 45m 내지 70m이다. 이 사건 도로는 기존왕복 8차선 도로(정릉길) 위에 있는데, 그 표고는 48m이고, 이 사건 아파트 각 동 1층 바닥의 표고는 52.9m이며, 이 사건 아파트 106동은 12층, 107동은 22층, 108동은 23층, 109동은 18층 높이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음도

- 갑이 2002. 10 경 이 사건 아파트 108동 1층 및 5층에서 측정한 소음도의 평균 값은 주간 68.5dB, 야간 66.3dB(실내에서 측정한 값은 주간 53.9dB, 야간 52.4dB)이다.
- 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위 108동에서의 소음도는 저층의 경우 주간 64.9dB, 야간 62.8dB 「한편, 실내 소음도는 34.6dB(주간에 창문을 닫고 측정한 것, 이하 같다. 창문 개방시 약 57dB), 중층의 경우 주간 약 74dB, 야간 약 73dB(실내소음도는 약 42dB (창문 개방시 약 57dB), 고층의 경우 주간 약 73dB, 야간 약 72dB(실내소음도는 약 38dB(창문 개방시 약 55dB)이다.

다. 이 사건 도로의 소음저감 시설

- 피고는 1998년 이 사건 도로 양측에 높이 2m의 방음 벽을 설치한 아래, 2004년 경 중앙분리대 방음벽 설치 공사, 이 사건 아파트 도로변 및 중앙분리대 소음감 소기 설치 공사 등을 실시하여, 현재 이 사건 도로에는 양단 측에 높이 3.5m의 투명형 방음벽과 소음감 소기, 중앙분리대에 높이 2.5m의 흡음형 및 간섭형 방음벽과 소음감소기가 설치되어 있다.

2) 한편, 소음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10톤 이상 화물차, 가스 및 유류운반 탱크로리 등의 특수차량은 통행을 제한시키고 있다.

대상판결의 요지

가. 인근소음으로 인하여 정온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 등이 인정되고, 위 침해적 요소는 물적 하자(영조물 자체에 존재하는 물리적·외형적 결함 내지 불비합이 있는 경우)와 기능적 하자(물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더라도 해당 영조물을 원래의 목적에 따라 적법하게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가 타인에게 위해를 미칠 경우)로 구별되는데, 물적 하자와 관련하여, 생활이익 형성 전에 이미 물적 하자가 완성되었고, 그것을 전제로하여 생활이익이 형성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물적 하자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기능적 하자와 관련하여, 생활이익 형성 전에 기능적 하자가 존재하였고 그것을 전제로 하여 생활이익이 형성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같은 정도의 기능적 하자만 유지된다면 원칙적으로 그러한 기능적 하자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생활이익의 형성 전에 존재하던 기능적 하자를 전제로 생활이익이 형성되었으나 그 뒤 침해적 요소가 변화하여 그 강도가 높아지는 경우 그 변화 자체를 새로운 기능적 하자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당해 요소가 첫째, 통상 예측 가능하며 이례성을 보이지 않는 자연스러운 변화인 경우, 둘째, 특정한 주체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작용인 경우, 셋째, 그것이 초래하는 불편함이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로서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도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거주하기 전에 이미 건설되어 사용하던 것인데, 위에서 본 각 점들에 의하면 원고에게 보호가치 있는 생활이익이

형성되기 이전과 이후의 소음의 정도에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도로상에 현재 존재하는 소음이 가능성적 하자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생활이익 형성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아울러 원고의 생활이익은 위와 같은 소음상황을 전제로 하여 형성된 것이라 할 수 밖에 없으며, 나아가 가령 원고의 생활이익 형성 이후에 어느 정도의 소음증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오로지 차량 통행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증가치가 과다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울 뿐더러 그러한 변화가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평가

대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법리가 실무상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위 사안은 도로개통 이후에 입주가 이루어진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다만, 위 대상판결이 선고된 이후 전주지법 군산지원 2009. 4. 24 선고 2008가합1301 판결에서 “주민들이 거주를 시작한 당시보다 소음이 현저히 증가하여 자신들이 향유하던 생활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을 주장·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바 있고, 서울동부지법 2009. 10. 14 선고 2008가합8407판결에서도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한 무렵의 소음도가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있거나, 소음이 조금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볼 수 있는 수준에 머무른다면 생활이익이 침해되었다거나 그 침해와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로 판시한 점은 참고할 만하다.